
2018년 3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18. 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2018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 회의

〈회의개요〉

- ◆ 일 시 : 2018. 1.26.(금) 10:00 ~ 11:10
- ◆ 장 소 : 시청 본관 7층 공용회의실
- ◆ 참 석
 - 심의위원 : 최재희, 성춘일, 이유진, 전진한
 - 배 석 : (간사) 정보공개정책과장 (서기) 정보공개지원팀장
- ◆ 안 건 : 이의신청 7건
 - (2018-6)2015 서울시 글로벌 마케팅 결과보고
 - (2018-7)2016 서울시 글로벌 마케팅 결과보고
 - (2018-8)서울시 글로벌 마케팅 사업 계약 관련 최종 산출내역서
 - (2018-9)서울시 글로벌 마케팅 사업 계약업체,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가 제출한 사업결과보고서, 사업비정산보고서
 - (2018-10)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 명단
 - (2018-11)특정 화재사건(창동, 도봉동)의 화재조사보고서 중 관계자 및 목격자 진술내용, 현장사진 등
 - (2018-12)특정 화재사건(방학동)의 화재조사보고서 중 관계자 및 목격자 진술내용, 감식기법 및 방화방식, 현장사진 등

◆ 심의결과(안건 순 배열)

- 부분인용
- 부분인용
- 인용
- 부분인용
- 부분인용
- 기각
- 기각

【 의안번호 2018-10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 명단

〈○○○ 위원〉

- 오늘은 성춘일 위원님, 전진한 위원님, 이유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의안번호 제2018-10호 자원순환과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소관부서 팀장, 주무관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입장)

〈○○○ 위원〉

- 안녕하세요? 소관부서 주무관께서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 자원순환과 주무관 ○○○입니다.

〈○○○ 위원〉

- 간사께서는 소관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8-10호 자원순환과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심의계획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주관부서는 심의계획 본문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에 대해서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이미 심의가 완료된 사항으로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하여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

- 주무관계서는 보완할 내용 없으십니까?

<○○○ 주무관>

- 없습니다.

<○○○ 위원>

- 본 안건은 ○○○ 위원께서 주심으로 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수탁자 선정심의는 이미 끝났죠?

<○○○ 주무관>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심의회에서 그동안 심의위원 명단은 거의 다 공개를 했습니다. 비공개를 한 것은 장애등급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에 자문의사 명단이었는데, 사실은 자문의료진 너무 풀이 적어서 병원에 찾아가거나 하는 부작용이 있어서 비공개를 했었고, 도시계획위원 전체명단은 공개했지만 참석하신 분들의 명단은 비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례를 빼고는 사실은 다 공개를 했습니다.

<○○○ 위원>

- 학교폭력위원회도 있었죠.

<○○○ 위원>

- 네, 맞습니다. 이런 사안들하고 비슷한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주무관>

- 첫 번째는 청구인이 착오를 한 것 같은데, 첨부되어 있는 자료는 심의위원 후보자 명부인데 이것을 심의한 명단인 것으로 착오해서 요청하셨다는 점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두 번째는 3월 달에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수탁자 선정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련 전문인력들이 한정되어 있고, 예를 들면 환경 쪽 교수님 중에서도 폐기물 이런 쪽을 전공하신 분을 모시다 보니 다음 심의에도 이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추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지금 후보자 풀이 총 몇 분이십니까?

<○○○ 주무관>

- 30분 있습니다.

<○○○ 위원>

- 그 30명의 명단 자체를 비공개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 주무관>

-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지만 저희 주장만 너무 강조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심의회 평가에 참여한 그 위원 명단은 공개할 용의는 있습니다.
- 왜냐하면 말 그대로 후보자 명부이고, 선정되지 않은 분들은 수당이 지급된 것도 아니고 30명 중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위원을 최종 결정합니다.

<○○○ 위원>

- 전체 명단보다 참석한 사람 명단이 더 민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

- 이 후보자 중에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분에 한해서 공개 가능하다는 취지이신 겁니까?

<○○○ 주무관>

- 네, 그렇습니다. 또 청구인이 원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 위원>

-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저는 오히려 참석한 사람 명단이 더 민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 심의회에 참석한 분들은 공개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청구 당시에는 왜 비공개하셨습니까?

<○○○ 주무관>

-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 심의위원들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정보공개법에서도 위원명단은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선정결과만 공포하게 되어 있고 명단까지는 공개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은 될 수 있으면 다 공개하더라도 마포 심의가 끝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심의가 끝나고 나서 심의회에 직접 참석해서 심의에 참여한 분들의 명단은 공개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 주무관>

- 네. 이의신청 문구대로 하면 시의원 한 분만 공개해도 큰 하자는 없습니다.

<○○○ 위원>

- 그것은 ‘전체명단 불가 시’를 가정해서 기재하신 것이고, 결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전체명단을 공개를 하고 참석한 사람 명단은 공개하지 않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했었는데요, 지금 반대로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공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핸드폰 번호는 삭제하고요.

<○○○ 위원>

- 네.

<○○○ 위원>

- 저는 특별한 의견은 없는데, 보통은 당해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예민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공개를 안 하고, 전체 명단은 이분 중 누

가 선정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민감하지 않은데 거꾸로 얘기를 하시니까 약간 혼동되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핸드폰 번호 등은 삭제하고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별 문제 없으시겠습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그렇게 하시죠.

<○○○ 위원>

○ 그럼 부분공개로 부분인용 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주무관>

○ 그러면 소속하고 직위까지만 공개를 하는 겁니까?

<○○○ 위원>

○ 네. 거기까지 하시면 되죠.

<○○○ 위원>

○ 핸드폰 번호는 지우고 소속, 직위, 이름,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죠.

〈○○○ 주무관〉

○ 알겠습니다.

〈○○○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 퇴장)

【 의안번호 2018-6~9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2015 서울시 글로벌 마케팅 결과보고(2018-6)
- 2016 서울시 글로벌 마케팅 결과보고(2018-7)
- 서울시 글로벌 마케팅 사업 계약 관련 최종 산출내역서(2018-8)
- 서울시 글로벌 마케팅 사업 계약업체,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가 제출한 사업결과보고서, 사업비정산보고서(2018-9)

※ 회의내용 중 개인정보 등 일부 비공개 사항 제외

<○○○ 위원>

-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6호~9호 관광사업과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부서 입장)

<○○○ 팀장>

- 안녕하세요.

<○○○ 위원>

- 소관부서 팀장께서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관광사업과 ○○○입니다.

〈○○○ 위원〉

- 간사께서는 소관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8-6호~9호 관광사업과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서울시 글로벌 마케팅 사업 관련 결과보고서, 최종 산출내역서, 사업정산결과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주관부서에서는 대행사의 사업에 관한 거래내용 등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시예산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금융정보 등 비공개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하여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

- 소관부서 팀장에서는 방금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첨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 기본적으로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가 원칙이라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입찰 제안을 통해서 대행사를 선정하고 대행사 기업에서 경영상 노하우나 창의성을 발휘해서 추진하게 되고, 나중에 최종결과물을 시에 보고하게 되는 사업의 영역입니다. 사업영역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고, 특히 인맥이나 네트워크에 대한 것들이 많이 녹아 있어서 공개됐을 경

우 관련자가 제목만 봐도 어떤 노하우와 기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 의견청취를 하니 경쟁사한테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 위원>

- 공식적으로 받으셨습니까?

<○○○ 팀장>

- 네, 받았습니다.

<○○○ 위원>

- 본 안건은 ○○○ 위원님과 제가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위원>

- 이런 사안은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공개가 됩니까?

<○○○ 팀장>

-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객관화되어 있고 계량화되어 있는 부분은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이었으면 바로 공개를 했을 텐데, 글로벌 마케팅사업의 경우는 국내 행사나 관광마케팅과 달리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기업 연관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 북미주 관련된 매체들의 기업정보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노출됐을 경우에 서울시 이미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 지금 ○ 측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사안이죠?

<○○○ 팀장>

○ 네.

<○○○ 위원>

○ 팀장님은 지금 이분 청구가 왜 들어왔는지, 왜 취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 팀장>

○ 네, 알고 있습니다. 조사과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제가 예전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10년도에 하이서울페스티벌에서 가수들한테 줬던 출연료, 행사비를 당시에 서울시가 다 공개를 했었습니다.

○ 그리고 SK 플래닛이라는 곳에서 재하청을 줘서 세금이 새고 있다라는 의혹이 있고 ○ 측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경쟁사에서 청구한 것도 아니고 비공개를 하시게 되면 더 의혹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 팀장>

○ 이 사업은 100억대의 큰 규모의 사업이고, 디지털 마케팅이나 일부분 광고가 작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 섭외를 하고, 한류스타를 활용을 하고, 큰 행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마케팅 전체 영역을 다 커버하려면 대형기획사가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형기획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조명, 셀

럽 선정, 무대설치, 전기 이런 부분들은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그런데 그 부분은 기업의 경영상 판단이고 서울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정산결과를 시로 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행사를 통해서 사업의 사업구현 형태, 사업효과를 낼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산 받는 구조입니다.
- 저희가 1월 말에도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인데, 지원자격에 대기업, 중기업 제한은 없고, 협약이나 논의할 때 대기업의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하는 일이 없도록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 다음에 경쟁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 쪽에서 요청한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 위원>

- 시민단체입니다.

<○○○ 팀장>

- 네. 시민단체가 요청한 사항인데, 사실 글로벌 마케팅 안에는 세부적으로 20가지가 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대다수가 연예인 광고료, 모델료, 해외 마케팅 관련 우수기업들한테 PPL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정보가 노출됐을 경우에 연예인 쪽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주는 광고료, 모델료의 한 1/10 정도 수준으로 계약되었고, 어떤 경우 기부형태로 공짜로 모셔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이 연예인이 어느 기획사랑 연관이 많이 있겠다’라든가, 또는 해당 경쟁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공개를 안 해 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공개가 되면 서울시에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의견도 밝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중국 같은 경우도 작년 사드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시기였는데, 인민일보라든가 CCTV 등에 저희가 협찬을 하거나 하고 나중에 찍어서 보낸 부분 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한 시대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공개가 되고 한다고 해서 중국에서 모를 리 없고 어느 정도 돈이 투입돼서 이런 광고가 나갔더라는 것들이 공개될 경우에 서울시가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공개를 못 하는 것이지,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 위원〉

- 예전에는 국내광고료, 해외광고료, 연예인 출연 다 공개했습니다.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됩니까?

〈○○○ 팀장〉

-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몇 년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의와 불만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저희가 광고 섭외를 했을 때 제한이 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많이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고요, 비공개로 요청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 위원〉

- 연예인들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실 때는 더 낮은 가격에 출연 하더라도 본인이 얻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본인들이 다 손익적인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출연을 결정하는 것이고, 해외광고 같은 경우도 방송에 이미 노출이 된 것인데 금액이 얼마인지의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 팀장〉

- 네, 방송에는 나오지만 인민일보나 중국 쪽에서는 서울시가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까지는 나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홍보할 때 ‘우리시에서 예산과 지원을 해서 CCTV나 인민일보에 광고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 비공개해야 될 사유를 서울시 사정이나 광고할 때의 어려움이 아니고 법률에 따라서 7호로 적으셨지 않습니까? 7호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어떤 문제가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팀장〉

- 저희 사업이 140억, 130억 되는 사업에 큰 사업으로 4개 정도의 사업항목이 있고, 그 안에 각각 세부적으로 5개~7개 정도의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 세부 사업 항목하고 금액 부분을 공개할 때 사업항목 하나당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노출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

- 서울시에 광고와 관련된 내용들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 공개를 했었습니다. 회사별로는 다 자기만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지만 서울시의 공적자금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 팀장〉

-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지금이 되게 예민한 시기입니다. 저희는 이 사항이 결과적으로는 중국에는 공개로 가더라도 이 시기는 피해줬으면 하

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관광객이 이제 막 다시 들어올 상황에 있고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동남아와 관련된 매체들에 우호관계나 신뢰를 보여줘야 될 시기이기도 하고요.

<○○○ 위원>

- 지금 비공개자료를 보면 하나는 산출내역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것이 있습니다.

<○○○ 팀장>

- 붙임에 정산내역서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 결과보고서는 제가 아무리 봐도 비공개할 이유를 못 찾았습니다.

<○○○ 위원>

- 결과보고서는 비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2015년, 2016년 결과보고는 일단 공개하셔도 되는 것이잖아요.

<○○○ 팀장>

- 결과보고 내용 중에 뒤에 금액이랑 붙임 정산자료, 그것은 저희가,

<○○○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산내역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팀장>

- 네, 맞습니다.

<○○○ 위원>

- 결과보고서는 제가 봐도 노하우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뭐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정산내역을 열어보면 거기에는 되게 구체적으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 위원>

- 우리가 자원순환과 안전도 사실은 회사 이름만 가리고 다 공개했지 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다른 점을 말씀해 주셔야죠.

<○○○ 팀장>

- 저도 사실은 처음에 정산결과보고서를 보고 별로 민감해 보이지 않았는데,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 그 항목 사업쪽지만 봐도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 위원>

- 비공개를 위해서는 비공개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행심에서 공개를 하라고 했고, 2011년도에 하이페스티벌 관련해서 공개한 적이 있어서 이 자료는 지금도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 또 이 사안은 일단 언론에서 비리의혹 때문에 취재를 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잘못하게 되면 또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하다는 이런 발언으로는 사실 비공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위원>

- 하도급업체에 갑질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그것만으로

는 안 됩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시에 보고한 것과 현장에서 지급한 금액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청구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실제 지급된 금액과 주관사가 올린 보고서상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 팀장>

-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그 자료의 일부가 시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시에서 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서 SK 플래닛 쪽을 통해서 받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드리고 싶어도 사실은 드릴 수 없는 자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 만약 이 자료가 공개가 되면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랑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팀장>

- 종합광고대행사는 수수료가 10%~50%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그 부분에 관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범위의 자료가 아니라서,

<○○○ 위원>

- 지금 문제제기를 하신 쪽이 하청업체 쪽인거 알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서울시에서는 얼마 줬다라는 것은 공개할 수 있어야죠. 비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 팀장>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아니라 조사 착수를 하고 있고 한 개별적인 부분

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 조사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청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팀장>

○ 그 사항에 대해서 물론 그분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서울시 전체 이미지와 기업 간의 신뢰문제, 협약했을 때 대행사와 우리 서울시와의 관계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 위원>

○ 그런 부분은 업체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팀장>

○ 그분들의 영업상 이익에 대한 사항이죠.

<○○○ 위원>

○ 말씀하신 서울시와의 신뢰관계 이런 부분은 비공개 사유가 안 됩니다.

<○○○ 팀장>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관계 안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켜주는 신뢰가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린 것이죠.

<○○○ 위원>

○ 서울시 같은 공공기관은 기업에 대한 신뢰보다는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부분에 대한 공익이 더 크지 않습니까.

<○○○ 팀장>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부서나 대행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기관에 의해서 정산 받고, 감사도 받고, 결산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려하신 사항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 다만, 이 사항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 대행사에서 본인들 기업과 해외 중국이나 일본, 북미주 관련매체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공개가 안 되어야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 위원>

- 정산내역서는 사실 너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큰 항목별로 SK 플래닛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하청 준 것까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공개하셔야 됩니다. 행정심판까지 다 거쳐서 끝난 사항들입니다.

<○○○ 팀장>

- 그러면 기업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결과보고를 한 사항에서 금액만 빼고 나머지는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 위원>

-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인민일보에 얼마나 줬는지, 그런 것은 서울시가 세금을 썼는데 다 공개해야 되는 것이죠.

<○○○ 위원>

- 여기 결과보고에 나와 있는 표 중에서도 집행예산부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 팀장>

○ 네. 맞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신청하신 분의 취지가 무산되는 것 같은데요.

<○○○ 위원>

○ 그것까지는 공개를 해야죠.

<○○○ 팀장>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보신 다음에 개별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개별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 위원>

○ 팀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 금액을 비공개하신다는 것이죠?

<○○○ 팀장>

○ 네. 어떤 말씀인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 위원>

○ 항목별 내역 정도는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세부정산내역서는 제가 봐도 너무 민감한 내용이고, 이것을 공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항목별 내역 정도도 공개를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심의회에서 예산지출에 대해서 이 정도를 비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작품구입 같은 경우 구입비 내용까지 다 공개했습니다.

<○○○ 위원>

- 만약 향후에 일어날 것에 대한 청구라면 모르겠는데 이미 다 집행이 된 것입니다.

<○○○ 팀장>

- 2016년, 2017년 것을 위주로 요청하셨지만, 저희 서울시의 글로벌 마케팅은 모든 마케팅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어도 앞으로의 방식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 대동소이하니까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죠. 여기서 비공개할 만한 내용이 전혀 안 보이는데요.

<○○○ 위원>

- 법적으로 봤을 때는 집행내역 같은 것들이 영업비밀에 해당에 한다고 동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 위원>

- 크게 사업 구분별로 예산이 나와 있고,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청구인도 가수 섭외비나 이런 세부사항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팀장>

- 그럼 붙임자료만 빼고 나머지는 다 공개하라는 말씀이시죠?

<○○○ 위원>

○ 네.

<○○○ 팀장>

○ ‘산출내역’은 저희가 재무과에 계약 심의할 때 보냈던 자료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공개 가능합니다.

<○○○ 위원>

○ 원청에서 얼마나 예산을 쫓는지를 지금 알고 싶어하는 것이니까,

<○○○ 위원>

○ 보통은 원청에서 이만큼 주겠다고 해 놓고 밑에서 다르게 주거나 이런 것이 많거든요.

<○○○ 위원>

○ 그 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인 정보로 보관되고 있는 정보도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 팀장>

○ 네, 맞습니다.

<○○○ 위원>

○ 일단은 지금 이 6호~9호까지 이의신청된 안건에 대해서는 여기에 비공개 자료가 올라와 있는 7가지(2015년 결과보고서 2건, 2016년 결과보고서, 2015년 대행사 결과보고 2건, 2016년 대행사 결과보고, 2015년 ~ 2017년 최종산출내역서)는 공개하고, 결과보고에 붙어있는 상세한 내역이 포

함된 붙임자료는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그러면 부분인용 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 퇴장)

【 의안번호 2018-11~12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특정 화재사건(창동, 도봉동)의 화재조사보고서 중 관계자 및 목격자 진술내용, 현장 사진 등(2018-11)
- 특정 화재사건(방학동)의 화재조사보고서 중 관계자 및 목격자 진술내용, 감식 기법 및 방화방식, 현장 사진 등(2018-12)

※ 회의내용 중 개인정보 등 일부 비공개 사항 제외

〈○○○ 위원〉

- 의안번호 제2018-11호~12호 청구인 이의신청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입장)

〈○○○ 위원〉

- 소관부서 팀장, 주무관계서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 도봉소방서 현장대응단에 근무하고 있는 화재감식분야에 ○○○입니다.

〈○○○ 위원〉

- 간사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8-11호, 12호 도봉소방서 현장대응단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도봉구 관내 화재조사보고서 4건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주관부서는 관계자, 목격자가 진술한 내용, 개인정보, 화재감식기법 및 방화방식에 대해서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 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하고, 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관계자 진술, 현장사진 등이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요구하며 이의신청하여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

- 소관부서 주무관계서는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 최초 민원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한 건이 3건이었으나 3건 중 한 건이 화재발생 일시가 상이해서 정정 건으로 인해 추가로 1건을 요청한 건으로 합이 3건입니다.
- 화재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위는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에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소방서장이 화재조사 서식에 의하여 해당서류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나, 정보공개를 요청한 민원인께서는 직접적인 화재와 상관이 있는 관계인이 아니고 보험회사 관계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3자의 일반 민원인으로서 저희가 작성하는 화재조사보고서에 민감한 내용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현장사진, 또 발견 통보 및 초기상황에 관해 관계자나 목격자가 진술한 사항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간사

계서도 말씀하셨듯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로 부분공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본 안건은 ○○○ 위원께서 주심으로 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관계자나 목격자가 진술한 내용은 6호의 사유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시고, 화재감식기법이나 방화방식, 현장사진 같은 것들은 사후 사유로 모방범죄나 범죄예방을 위해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신 것이 맞으시죠?

<○○○ 주무관>

○ 네.

<○○○ 위원>

○ 비공개자료 중에도 비공개하여야 된다는 부분을 특정을 해서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사진이나 감식기법, 방화방식 같은 것들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범죄예방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무관>

○ 먼저 첫 번째로 비공개된 부분 중에 명확하게 비공개 되어야 될 부분이 분리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비공개한 부분은 화재발생 주소 및 관계자 인적사항이고요. 보이는 부분은 공개된 부분이고, 음영 처리된 부분만 비공개 부분입니다.

- 그리고 위치도나 위치를 알 수 있는 지도라든가, 현장사진 같은 경우는 일반 사진이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과 아주 밀접한, 개인주택 안에 내부가 전부 공개되는 사진입니다. 개인의 가재도구 등 개인의 사생활과 아주 밀접한 물품들이 찍혀있는 사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사선택을 해서 공개한다기보다는 화재현장에서 찍은 것은 전부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 그리고 방화기법이나 감식기법은 만약 일반인한테 공개됐을 경우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모방할 수 있어서 충분히 범죄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

- 이것은 이미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된 부분 아닌 겁니까?

<○○○ 주무관>

- 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민원 법률자문을 법률사무소에 요청을 한 건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방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상황이 맞다라는 취지의 답변서가 왔습니다.
- 그리고 화재발생보고서의 경우 관계인이나 보험사 요청할 경우 관계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를 해 드리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분께서 요청을 하셨기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인사생활과 방화 관련된 모방범죄에 조금이라도 연관사항이 있다면 제3자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주소, 성명 부분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최소한도로 비

공개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사진은 언론사라면 누구나 화재현장에 가서 진압하는 부분을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주무관>

- 현장사진 같은 경우는 언론홍보에 공개적으로 배포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누구나 언론인이라면 저희 본부 해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그 사진을 제외한 사진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는 분야에서 촬영을 하고 조사보고서에 관련된 분야만 사용하기 때문에 평소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 위원>

- 일반 취재하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사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주무관>

- 네, 별도로 언론에는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 위원>

- 이전에 사찰의 화재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청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한 50분 분량 중에 30분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동영상 30분은 공개할 수 있는데 사진을 비공개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 주무관>

-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언론들한테 정보제공을 하는 동영상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 위원>

- 그때 공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체로 저희가 청구를 받았고 심의를 했었습니다.

- 동영상 중 얼굴 초상권만 지우고 그때 암호소리 같은 것을 지우고 30 몇 분을 공개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공개할 수 있으면 나머지 사진은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주무관〉

- 저희가 화재진압 과정과 관련된 것은 공개할 수 있는데, 저희 보고서에 들어가는 것이 진압에 관계된 부분은 일부분이고 주로 진압 이후에 세부적인, 예를 들자면 화재가 난 주택 안방, 작은방, 거실, 가재도구까지 이런 세세한 부분이 명확하게 찍혀서 나오고, 개인적인 사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이 명확하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취사선택해서 어느 부분은 지우고 어떤 부분은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화재조사종합보고서에 들어가는 정식보고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동영상하고는 다르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 몇 가지 사진은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사진이 있다고 하셨는데, 공개사진의 선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 주무관〉

- 소방재난본부에 언론홍보팀이 있는데 그쪽에서 판단 유무를 결정을 해서 올려 놓고 있습니다.

〈○○○ 위원〉

- 그러면 판단해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모방범죄의 위험이 없는 것들을 취사선택해서 공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주무관>

○ 네, 주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사진을 보면 대체적으로 집안 내부 사진 정도 빼놓고는 다 특별할 게 없는 사진입니다. 내부사진조차도 개인 그분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공개돼도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주무관>

○ 개인적으로도 본인 집을 제3자가 무방비 상태로 보는 것이 과연 개인정보가 아닐 수 있을까요?

<○○○ 위원>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기는 한데 그 소유자나 그 공간을 지배하는 개인이나 기업 측면에서 내 공간과 재산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별정보인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비공개 사유가 4호하고 6호이지 않습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6호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4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모방범죄가

4호의 사유인 것이죠?

〈○○○ 주무관〉

○ 네.

〈○○○ 위원〉

○ 제 의견으로는 그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소방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4호하고 6호가 다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 위원〉

○ 전체적으로 사진을 다 봤을 때 이것이 4호인지 6호인지 구분해 내거나 공개 가능한 부분을 나누어볼 수 있겠으나,

〈○○○ 위원〉

○ 그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것이죠.

〈○○○ 위원〉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를 가려낼 실질적인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모방범죄의 위험과 관련해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4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도 같습니다.

〈○○○ 위원〉

○ 네.

〈○○○ 위원〉

- 그러면 본 안건은 두 건 다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주무관〉

- 감사합니다.

(소관부서 퇴장)

〈○○○ 위원〉

-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